

다양한 저리의 자금 지원 ;

자금지원

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

●● 지원대상

-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'중소기업기본법'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

*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

- 신청일 현재 휴 · 폐업중인 업체
-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
단, 조기상환 후 재 용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
-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(단,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)
- 경영안전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가능
-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 가능
-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(창경, 경안)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

●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(1,000억원)

- 업체당 10억원 한도, 변동금리(20. 4분기 1.6%), 융자기간 8년(3년 거치 5년 상환)

● 경영안정자금(2,000억원)

- 업체당 5억원 한도, 은행자율금리에서 1.8% 차감, 융자기간 2년(일시상환)
- 연매출액의 50% 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

●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(150억원)

- 업체당 5억원 한도, 은행자율금리에서 1.8% 차감, 융자기간 2년(일시상환)

●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(300억원)

- 업체당 3억원 한도, 은행자율금리에서 1.8% 차감, 융자기간 2년(일시상환)

● 벤처 · 지식산업지원자금(150억원)

- 시설 5억원 한도, 융자금리 연 1.8% 고정, 2년거치 3년상환
- 운전 2억원 한도, 융자금리 연 1.8% 고정, 2년거치 3년상환

● 청년창업지원자금(20억원)

- 업체당 1억원 한도, 융자금리 연 1.8% 고정, 1년거치 4년상환

●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(300억원)

- 업체당 3억원 한도, 융자금리 연 1.8% 고정, 융자기간 2년(일시상환)

이전기업 세제 감면 및 신속한 행정지원 서비스 ;

세제지원

국세 감면 (일몰기한 2021년말)

-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연기, 그후 5년간 분할 납부
 -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
 - 공장이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
- 법인세 7년간 100%, 그후 3년간 50% 감면(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증평, 과산, 단양)
- 법인세 5년간 100%, 그후 2년간 50% 감면(청주, 충주, 진천, 음성)
 - 중소기업(2년 이상 영위)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
 - 3년이상 영위한 공장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

지방세 감면 (일몰기한 2022년말)

- 취득세 75% 감면, 재산세 5년간 75% 감면
 - 도내 산업단지 입주시

행정지원

기업민원 One-stop 처리

- 인·허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One-stop 기업민원서비스 제공

투자기업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

- 기업이 원하는 부지제공부터 공장가동시까지 투자상담 및 기업민원 처리

투자기반 인프라(전력, 통신, 도시가스 등) 신속한 지원

- 한국전력, KT, 도시가스 등 56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

